

#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77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협행 조례에 내용이 누락된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 증대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상향 조정(안 제8조)
    - 디자인 전문가를 추가 구성하여 전문성 증대
  - 심의, 자문, 협의 대상 명확화(별표)
    -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과 디자인 총괄부서 협의 대상 구분 명확화

## □ 개정조례안 : 붙임1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10. 10. ~ 2018. 10. 31.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4
  - 방침결정문 : 불임5

## < 불임 1 >

#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시디자인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담당·팀장 직위·성명	디자인기획팀장 연창희
	담당자 성명·전화	강선희 (행정 2635)

## 【별표】

다음 심의·자문·협의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 1. 심의대상

구 분	세부 항목		
대중 교통 시설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시설물 마. 환기구(흡·배기구) 사. (경)전철 관련 설치물	나. 자전거보관대 라. 지하철출입구 바. 교통량 검지기 아. 신호등 제어함	
도로 기반 시설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등(공공시설 포함)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우교/엔리베이터 포함 바. 빙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용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휴양 시설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		
공공 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등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복지 시설	가. 도서관 다. 공연·전시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
	전시· 홍보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	나. 미술관 라. 전시장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
	기타	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	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 2. 자문대상

구 분	세부 항목		
공공미술 등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다. 미디어아트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바. 실내용 가구 야. 정보안내용품 등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계시대, 지점벽보판 등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시각매체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슬로건, 로고,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 3. 협의대상

구 분	세부 항목
보행 안전 시설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휀스), 가드레일 라. 배수구 덮개 마.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 시설	가. 맨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공중전화 라.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방범용 카메라 바.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독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6. (생략)</p>	<p><b>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u>시장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u></p> <p>1.~6. (현행과 같음)</p>
<p><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 ----- <u>20명</u> -----.</p>

## 【별표】

현 행		개 정 안																																																				
분 류	세 부 항 목	구 분	세부 항 목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음 심의·자문·협의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심의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세 부 항 목</th> </tr> </thead> <tbody> <tr> <td>대중교통 시설물</td> <td>가. 버스·택시 승차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마. 교통량 검지기 사. 공영주차장 등</td> </tr> <tr> <td>보행안전 시설물</td> <td>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다. 가드레일 마. 보행유도등</td> </tr> <tr> <td>편의 시설물</td> <td>가. 벤처 나. 파고라(엘터 포함)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아. (관광)안내소</td> </tr> <tr> <td>공급 시설물</td> <td>가. 맨홀 나. 배전함 라. 방재시설(재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td> </tr> <tr> <td>녹지 시설물</td> <td>가. 가로수보호대</td> </tr> <tr> <td>정보 매체</td> <td>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 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td> </tr> <tr> <td>도로 시설물</td> <td>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바. 생태통로</td> </tr> <tr> <td>도로 부속 시설물</td> <td>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마. 중앙분리대 사. 석축 및 옹벽 등</td> </tr> <tr> <td>가로 공간</td> <td>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td> </tr> <tr> <td>안내 시설물</td> <td>가. 안내표지판 다. 지정벽보판 등</td> </tr> <tr> <td>교통기반 시설물</td> <td>가. 지하철 출입구 다. 전철 관련 설치물 라. 교통량 검지기 등</td> </tr> </tbody> </table>		분 류	세 부 항 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마. 교통량 검지기 사. 공영주차장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다. 가드레일 마. 보행유도등	편의 시설물	가. 벤처 나. 파고라(엘터 포함)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아. (관광)안내소	공급 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라. 방재시설(재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	녹지 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정보 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 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도로 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바. 생태통로	도로 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마. 중앙분리대 사. 석축 및 옹벽 등	가로 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안내 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다. 지정벽보판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다. 전철 관련 설치물 라. 교통량 검지기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항 목</th> </tr> </thead> <tbody> <tr> <td>대중 교통 시설</td> <td>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시설물 마. 환기구(흡·배기구) 사. (경)전철 관련 설치물</td> </tr> <tr> <td>도로 기반 시설</td> <td>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등 (공공시설 포함) 라. 지하(차)도(지상 둑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td> </tr> <tr> <td>공원, 휴양 시설</td> <td>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td> </tr> <tr> <td>공공 미술</td> <td>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등</td> </tr> <tr> <td>공공 청사</td> <td>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회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td> </tr> <tr> <td>문화 복지 시설</td> <td>가. 도서관 다. 공연·전시장 마. 복지회관</td> <td>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td> </tr> <tr> <td>공공 건축 물</td> <td>전시 · 홍보 시설</td> <td>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td> <td>나. 미술관 라. 전시장</td> </tr> <tr> <td></td> <td>환경 시설</td> <td>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td> <td>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td> </tr> <tr> <td></td> <td>기타</td> <td>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td> <td>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항 목	대중 교통 시설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시설물 마. 환기구(흡·배기구) 사. (경)전철 관련 설치물	도로 기반 시설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등 (공공시설 포함) 라. 지하(차)도(지상 둑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휴양 시설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	공공 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등	공공 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회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문화 복지 시설	가. 도서관 다. 공연·전시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 건축 물	전시 · 홍보 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	나. 미술관 라. 전시장		환경 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		기타	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	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분 류	세 부 항 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마. 교통량 검지기 사. 공영주차장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다. 가드레일 마. 보행유도등																																																					
편의 시설물	가. 벤처 나. 파고라(엘터 포함)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아. (관광)안내소																																																					
공급 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라. 방재시설(재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																																																					
녹지 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정보 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 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도로 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바. 생태통로																																																					
도로 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마. 중앙분리대 사. 석축 및 옹벽 등																																																					
가로 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안내 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다. 지정벽보판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다. 전철 관련 설치물 라. 교통량 검지기 등																																																					
구 분	세부 항 목																																																					
대중 교통 시설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시설물 마. 환기구(흡·배기구) 사. (경)전철 관련 설치물																																																					
도로 기반 시설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등 (공공시설 포함) 라. 지하(차)도(지상 둑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휴양 시설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																																																					
공공 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등																																																					
공공 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회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문화 복지 시설	가. 도서관 다. 공연·전시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 건축 물	전시 · 홍보 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	나. 미술관 라. 전시장																																																			
	환경 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																																																			
	기타	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	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현 행		개 정 안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자문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th>세 부 항 목</th></tr> </thead> <tbody> <tr> <td>공공미술</td><td>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td></tr> </tbody> </table>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3">세부 항목</th></tr> </thead> <tbody> <tr> <td>공공미술 등</td><td>가. 벽화</td><td>나. 슈퍼그래픽</td><td>다. 미디어아트 등</td></tr> <tr> <td>공공용품</td><td>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td><td>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바. 실내용 가구 아. 정보안내용품 등</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항목			공공미술 등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다. 미디어아트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바. 실내용 가구 아. 정보안내용품 등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구 분	세부 항목																																	
공공미술 등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다. 미디어아트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바. 실내용 가구 아. 정보안내용품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3">세부 항목</th></tr> </thead> <tbody> <tr> <td>정보매체</td><td>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을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td><td>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td><td></td></tr> <tr> <td>공공시각매체</td><td></td><td>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슬로건, 로고,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항목			정보매체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을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시각매체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슬로건, 로고,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구 분	세부 항목																																	
정보매체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을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공간, 등산로, 산책로 등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체육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시각매체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슬로건, 로고,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협의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th>세 부 항 목</th></tr> </thead> <tbody> <tr> <td>공공청사</td><td>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주민센터 라. 소방서 마. 청소년수련시설 바. 재활용 선별장 등</td></tr> <tr> <td>문화·복지 시설</td><td>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td></tr> <tr> <td>교통시설</td><td>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td></tr> <tr> <td>환경시설</td><td>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td></tr> </tbody> </table>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주민센터 라. 소방서 마. 청소년수련시설 바. 재활용 선별장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3">세부 항목</th></tr> </thead> <tbody> <tr> <td>보행 안전 시설</td><td>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휀스), 가드레일 라. 배수구 닦개 마.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td><td></td><td></td></tr> <tr> <td>편의 시설</td><td>가. 맨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공중전화 라.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td><td></td><td></td></tr> <tr> <td>공급시설</td><td>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방범용 카메라 바.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td><td></td><td></td></tr> <tr> <td>녹지시설</td><td>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항목			보행 안전 시설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휀스), 가드레일 라. 배수구 닦개 마.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 시설	가. 맨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공중전화 라.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방범용 카메라 바.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주민센터 라. 소방서 마. 청소년수련시설 바. 재활용 선별장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구 분	세부 항목																																	
보행 안전 시설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휀스), 가드레일 라. 배수구 닦개 마.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 시설	가. 맨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공중전화 라.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방범용 카메라 바.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th>세 부 항 목</th></tr> </thead> <tbody> <tr> <td>공공용품</td><td>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아. 정보안내용품 등</td></tr> </tbody> </table>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아. 정보안내용품 등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사. 행사용품 아. 정보안내용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th>세 부 항 목</th></tr> </thead> <tbody> <tr> <td>시각이미지</td><td>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td></tr> </tbody> </table>		분 류	세 부 항 목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분 류	세 부 항 목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